

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장제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16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6. 1.

발의자 : 장제원 · 여상규 · 김경진
원유철 · 이채익 · 김영우
김현아 · 박덕흠 · 박성중
유재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,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.

이에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(안 제14조제1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3호 중 “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) ①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「<u>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9조 및 제11조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14조(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「<u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----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